변 경 대 비 표

[투자설명서(집합신고서)]

1. 펀드명 : 하나 LBS 사모특별자산증권투자신탁제 1 호(채권혼합)

2. 주요 변경내용

- 모투자신탁(하나 L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한도 변경 및 투자제한 추가

3. 변경효력발생(예정)일 : 2023 년 07 월 05 일

4. 대비표

구 분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변경에 따른		**2023.07.07 및 상기 :** 모투자신탁(하나 **LBS 공모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의 집합투자증권등 투자한도 변경 및 투자제한 추가**
8. [모집합투자기구] 가. 투자대상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한도 변경	하나 LBS 성장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투자비율: 70% 이하 모 성장주&집합투자기구는 20%이내 투자가능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하나 LBS 성장주&지배구조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등 투자비율: **100% 이하**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식, 채권, 어음, 자산유동화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준용합니다. 1.~4. (생략)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준용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모집합투자기관) 14. 투자제한	6.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투자대상으로 하기에 적은 것은 별도 이다. 7.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제한 으로	하나 UBS 분모주식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재권존중) 동일회계투자 (생략) 나. 지정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파주 정합된 합법이 정행한 파생기업인증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1 호 자체의 증권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한 제정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인 정행한 어음 또는 영도성 매권증서의 공단 조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이 정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인 지급불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정행한 채권한 제정한다). 또는 어음, 상업증권계정기구에 기업자가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정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주택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준용합니다. 1.~4. (현행과 같음)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하나 UBS 분모주식지배구조 증권모투자신탁(재권존중) 동일회계투자 (생략) 나. 지정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파생결합증권 파주 정합된 합법이 정행한 파생기업인증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1 호 자체의 증권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한 제정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인 정행한 어음 또는 영도성 매권증서의 공단 조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이 정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증권기관인 지급불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정행한 채권한 제정한다). 또는 어음, 상업증권계정기구에 기업자가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정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Deleted: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

		사업개 ㅣ 주택지원제준공회피시, 한국주택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관광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조 조제 2 항제 5 호 기재주미사회기지의 관광기관의 지급증 보증관 주택지원준공을 정한다. 법시행령 제 7조 제 2 항 제 5 호 기재주민 사회기지의 고정형 따른 관광기관에 관한을 대여하거나 매지 · 매학하여 위독한 제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금융 투자신탁 자산총의고금액 자산총액의 20%까지 투자하는 경우 (신탁)	사업개 ㅣ 주택지원제준공회피시, 한국주택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관광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조 조제 2 항제 5 호 기재주미사회기지의 관광기관의 지급증 보증관 주택지원준공을 정한다. 법시행령 제 7조 제 2 항 제 5 호 기재주민 사회기지의 고정형 따른 관광기관에 관한을 대여하거나 매지 · 매학하여 위독한 채권매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 - 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5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가 보조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4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위탁하는경 투자회사등 투자투자증권과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의 최대를 초 한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투자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별의 투자신탁형식으로 설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중수인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별표, 다만,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전부하는 중수인 상장지수 투자원 수 20인, 의 과반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ㅇ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영시행령 제 68 조 제 11 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별표
		판도조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매각, 만기도래 등 조건형이 속하시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1 호 내지 제 5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이내부터 등으로 처분하여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해당한 것으로 봅니다.	판도조과 보유하고 있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재산의 일부매각, 만기도래 등 조건형이 속하시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 19 조제 1 호 내지 제17호 내지 제 5 호, 제 19 조제 2 호 내지 제 4 호 및 제 5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이내부터 등으로 처분하여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투자한도에 해당한 것으로 봅니다.